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최종공포일 2024.12.24.>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업무수행 중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24>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환경 경영활동과 회사 「정관」 제2조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활동에 적용한다. 다만, 해외 현지의 사업수행 관련 활동은 현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4.12.24>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설 2023.12.21>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신설 2023.12.21>
 - 다.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신설 2023.12.21>
3. “법”, “영”, “규칙”이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12.24>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1>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8. “수급업체”란 회사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신설 2023.12.2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신설 2023.12.21>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신설 2023.12.21>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신설 2023.12.21>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신설 2023.12.21, 개정 2024.12.24>
- 10.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발주공사 근로자, 국민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1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 12. “중대재해”란 「법」 제2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13. “총괄부서”란 회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14. “주관부서”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 안전보건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가. 재난안전주관부서 :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관리 담당부서 <신설 2023.12.21>
 - 나. 산업안전주관부서 :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담당부서 <신설 2023.12.21>
 - 다. 보건관리주관부서 : 임직원의 보건관리 담당부서 <신설 2023.12.21>
 - 라. 자산관리주관부서 : 사옥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담당부서 <신설 2023.12.21>
-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16. “관리감독자”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어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17. “안전관리자”란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12.24>
- 18. “보건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12.24>
- 19. “환경기술인”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20. “통합경영매뉴얼”이란 고객 요구사항, ISO 9001, ISO 14001 및 ISO 45001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과적 적용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을 증진시키는 품질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통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 21.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란 통합경영매뉴얼의 이행을 위해 수립된 회사 표준업무절차로서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환경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수행 절차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21>
- 22.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회사가 수립해야 하는 다음 연도 안전경영활동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4.12.24>

제 4 조 (안전보건방침)

- ① 관리책임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안전보건방침에 대하여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보건방침을 준수하며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수의무)

- ① 관리책임자는 본사 및 현장(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해당 사업장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환경 관련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 ② 모든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보호에 관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스스로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4.12.24>

제 6 조 (협조의 요청 등)

-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및 기타 관계인 주관부서장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 7 조 (보고, 출석의 의무)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총괄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제 1 절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

제 8 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 ① 회사는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를 두며, 안전보건활동을 위하여 본사 및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둔다. 다만, 임직원의 보건관리업무는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4.12.24>
- ③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12.24>

제 9 조 (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

- ① 본사 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하고, 현장 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지사장 및 연락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별표 2(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 ② 본사 관리감독자는 각 처·실장으로 하고 현장 관리감독자는 현장소장이 지정한 자(공사팀장, 작업반장 등)로 하며,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별표 2(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22.07.15, 2024.12.24>
- ③ 안전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선임하여 운영하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별표 2(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 ④ 보건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선임하여 운영하며,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별표 2(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선임하여 운영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별표 2(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 ⑥ 회사는 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4>

제 9 조의2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본사 관리감독자가 소속 부서원 중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리감독자 업무 보좌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제언
- 2.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대한 내·외부 창구역할
- 3.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본조신설 2024.12.24]

제 10 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 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영」 별표4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2. 선임기준 : 「영」 별표3에 따름
-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관리자의 자격 : 「영」 별표6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2. 선임기준 : 「영」 별표5의 기준에 따름
- ④ 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① 회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다.
-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12 조 (작업지휘자)

현장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내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 2 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제 13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1>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 14 조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총괄부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규칙」 제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2. 수급인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 3.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 ④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신설 2024.12.24>

제 15 조의2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노사협의체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그 외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3 절 안전경영책임계획 등

[본절신설 2024.12.24]

제 16 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 ① 총괄부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공공기관 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 ① 총괄부서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24>

② 총괄부서는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 후 공시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관리

제 1 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제 18 조 (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종교시설, 운수시설, 지하도상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되는 현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4]

제 19 조 (안전점검)

① 회사는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순회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의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② 자산관리주관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옥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 또는 합동순회점검을 포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제 20 조 (안전검사)

① 회사는 회사 소유의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은 「영」 제78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회사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21 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제1항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와 방호장치 등은 「법」 제6장제1절에 따른다.

제 22 조 (안전인증)

회사는 「영」 제74조에 해당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① 회사는 작업상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이하 “개인보호구”라 한다)를 현장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개인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지급되는 개인보호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 제공하며 업무별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종사자는 작업 중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24.12.24>

④ 종사자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는 해당 법규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 24 조 (안전보건 작업수칙)

① 종사자가 각종의 작업수행 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안전보건 작업수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② 종사자는 안전보건 작업수칙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 25 조 (안전보건 관계자 평가)

① 총괄부서는 제9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최초평가는 현장 개설 6개월 이내 시행되어야 하며, 이후 반기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목개정 2024.12.24]

제 26 조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지침」내 적용범위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작성 및 보존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27 조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① 회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한 환경 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및 그에 따른 시료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작업환경의 측정방법·횟수, 그 밖의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 28 조 (안전보건 표지)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지시·안내·금지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물체에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 29 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

① 근로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④ 회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30 조 (회사의 작업중지 요청)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회사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31 조 (위험작업허가서의 발생 및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시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작업
3. 고소작업
4. 법정 위험기계기구의 설치 또는 개·보수 작업
5. 중량물 취급작업

- 6. 양중작업
 - 7. 위험물 취급작업
 - 8. 야간작업
 - 9. 기타 관리감독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작업
- ② 위험작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제 32 조 (회사 단독작업 제한)

- 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단독으로 현장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설비 점검 또는 작업시 2인이상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 33 조 (교통재해 예방)

- ① 회사는 회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 등이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 34 조 (비상조치계획)

- ① 총괄부서는 중대재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비상조치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 2. 사고발생 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비상연락체계(고용노동부,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 3.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4. 주민홍보계획
 - 5. 그 밖에 필요로 하는 비상조치 관련 사항
- ③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근로자, 시민,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12.24>
- ④ 비상조치계획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35 조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① 총괄부서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대비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한다.
- ②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2 절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제 36 조 (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 관리)

- ① 산업안전주관부서는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 ② 도급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와 작업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 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포함되는 내용, 자격 및 수급업체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안전보건역량 적격 수급업체 선정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 ④ 도급사업 발주부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 ⑤ 도급사업 발주부서는 도급, 중금속 가공, 유독성물질 사용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할 수 없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도급사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장제2절을 따른다.
[제35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37 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 ① 회사는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12.24>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화재·폭발 또는 지진 발생 등 비상상황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비방법 등 훈련
 - 6. 위생시설 등 「규칙」에서 정하는 장소의 제공 및 이용의 협조
- ② 그 밖에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는 「법」 제5장제3절을 따른다.
- ③ 도급사업 발주부서는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지침」을 따른다.
[제36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3 절 근로자 보건관리

제 38 조 (건강진단)

- 회사는 「법」 제8장제2절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39 조 (건강진단 결과조치)

- ①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2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제3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200조부터 제207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0 조 (건강진단 수검의무)

- 근로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33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1 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회사는 「법」 제138조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규칙」 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2 조 (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3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를 따른다.

[제42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4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규칙」 제141조에서 규정한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에 해당하는 대상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의 경고표시에 대한 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3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5 조 (의무실의 설치·운영)

회사는 의무실을 설치·운영하고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질병치료 등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 46 조 (휴게시설의 설치)

회사는 종사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4>

[본조신설 2023.12.21]

제 4 장 안전보건교육

제 47 조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는 전년도 교육실적을 분석하고 당해연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초 수립해야 한다.

② 현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법」 제29조에 따라 수립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의 계획, 종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제44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8 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① 총괄부서는 재난안전, 산업안전, 시설물 안전, 보건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총괄하며 관련 주관부서는 해당 교육 시행을 지원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1. 본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 제47조 교육 계획에 따름 <신설 2024.12.24>

2.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 「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 <신설 2024.12.24>

3. 안전보건 관계자 : 「법」 제32조 및 「규칙」 제29조 <신설 2024.12.24>

[제45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49 조 (안전보건교육 방법)

주관부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개정 2024.12.24>

1. 집체교육 :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 <개정 2024.12.24>

2. 현장교육 :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24>

3.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개정 2024.12.24>

4. 비대면 실시간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 <신설 2024.12.24>

[제46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0 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등 회사 안전보건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외 안전보건관리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6. 기타 사외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제47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1 조 (교육성과 측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종료 시 시험·설문조사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수료여부로 교육성과 측정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48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2 조 (기록·보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한다. 다만,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보존한다. <개정 2024.12.24>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강사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9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3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제 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개인보호구 <개정 2024.12.24>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제50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 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제 54 조 (산업재해 보고)

① 산업재해로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의 은폐 또는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허위보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근로자 본인 또는 최초 목격자는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사항을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 사고즉보
2. 사고발생 보고서
3.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시)
4. 산업재해조사표

④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방법, 처리 및 신고,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제51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5 조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중지 등 재해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재해자에 대한 초기 응급조치 후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제52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6 조 (산업재해 조사)

① 총괄부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팀을 구성하고 사고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팀장이 되어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③ 사고조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1. 사고 현장 현황 (공사개요)
2. 전체 공정을 및 사고 공구 공정을
3. 현장 안전조직 및 업무분장
4. 사고 관련 협력업체 현장조직
5. 위험성평가표,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조치 이행상태
6. 안전보건 협의체 등 회의록
7. 안전보건교육 사항
8. 보호구 지급현황
9. 건설장비 완성검사 및 자체검사 실시 상태
10. 목격자 및 담당공구 책임자, 기사 인터뷰
11. 공사작업계획서
12. 안전관리계획서
13. 기타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7 조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① 사고조사팀은 동일 또는 유사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해야하며, 필요시 전문지도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원인분석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괄부서는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추적·관리해야 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 장 위험성평가

제 58 조 (위험성평가 목적)

회사는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55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59 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① 회사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예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신설 2023.12.21>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신설 2023.12.21>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신설 2023.12.21>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신설 2023.12.21>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3.12.21>
6.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23.12.21>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개정 2023.12.21>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개정 2023.12.21>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개정 2023.12.21>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개정 2023.12.21>

④ 회사가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을 할 것 <개정 2023.12.21>
2. 매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인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개정 2023.12.21>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 할 것 <개정 2023.12.21>

[제56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0 조 (위험성평가 실시)

- ① 총괄부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시기, 절차 및 관련자 교육 등 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험성평가의 계획,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 ④ 회사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12.21>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신설 2023.12.21>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21>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신설 2023.12.21>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설 2023.12.21>
- ⑥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7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1 조 (위험성평가 절차)

- ①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절차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②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를 한 가지 이상 포함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을 도출해야 한다. 단, 제1호에 의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2023.12.21>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기존 점검 및 평가 시 점검 결과)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개정 2023.12.21>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개정 2023.12.21>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개정 2023.12.21>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개정 2023.12.21>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신설 2023.12.21>
- ③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파악된 각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 ④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유해·위험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라고 결정한 경우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개정 2023.12.21>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개정 2023.12.21>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정 2023.12.21>
 4. 개인보호구의 사용 <개정 2023.12.21, 2024.12.24>
- [제58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2 조 (위험성평가 결과)

- ①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제61조에 따라 실시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신설 2023.12.21>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신설 2023.12.21>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신설 2023.12.21>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23.12.21>
 - ②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③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를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59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7 장 환경관리체계

제 63 조 (환경관리 조직)

- ① 회사는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 ② 회사는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관리업무 주관부서를 두며, 사업 현장의 환경보호활동을 위하여 현장별 환경관리조직을 둔다.
- [제60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4 조 (환경관계자의 직무)

- ① 주관부서장은 제63조부터 제70조에 규정된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3.12.21>
 - ② 현장소장은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계획 추진
 2.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3. 환경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등록, 이행
 4. 환경관련 비상사태 식별, 대응계획 수립 훈련실시
 5.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기타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1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5 조 (환경오염 방지시설)

회사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62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6 조 (폐기물 관리)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지역 내의 적법한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현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감량화 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제63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7 조 (대기보전)

회사는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노력을 해야 한다.

[제64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8 조 (수질 및 토양보전)

회사는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제65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69 조 (소음·진동방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은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제66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70 조 (환경점검)

① 환경점검은 현장 환경관리활동 지도 및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환경점검은 주관부서에 의한 점검과 현장자체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으로 구분되며, 환경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에 따른다.

③ 환경점검 중 파악된 부적합 사항은 적시에 적정하게 시정조치되어야 하며, 제반 환경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67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8 장 기타

[제목개정 2024.12.24]

제 71 조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개정)

① 총괄부서는 회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규정의 개정 시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8조에서 이동 2023.12.21][제목개정 2024.12.24]

제 72 조 (안전보건환경 경영)

① 회사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은 「규정」, 통합경영매뉴얼,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통합경영매뉴얼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를 따른다. <개정 2024.12.24>

② 통합경영매뉴얼은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회사 고유의 제도를 접목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통합경영매뉴얼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는 회사의 재규정 등의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개정은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4.12.24>

④ 총괄부서는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회사의 안전보건환경 통합 경영시스템을 수립·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73 조 (안전건의)

① 회사는 종사자의 안전 위해요소, 안전문화 저해요소 또는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총괄부서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접수된 안전관련 제안의견에 대하여 조치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개선조치를 독려해야 한다.

③ 채택된 기명 안전건의 의견은 「개선제안규정」을 준용하여 포상한다.

④ 회사는 기명 안전건의제도를 통하여 건의한 종사자에게 불이익, 차별대우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12.24>

[제70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74 조 (안전문화 확산)

① 산업안전주관부서는 안전문화 교육, 안전문화 수준 평가,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 사내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회사는 대국민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71조에서 이동 2023.12.21][제목개정 2023.12.21]

제 75 조 (상벌)

안전보건환경업무와 관련하여 상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벌의 시행은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에서 이동 2023.12.21]

제 76 조 (전문성 강화 및 우대사항)

①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인사상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우대할 수 있다.

② 안전 분야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 77 조 (보칙)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품질안전보건환경 통합경영매뉴얼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절차서로 정한다.

[제73조에서 이동 2023.12.21]

부 칙(2011.0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06)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시행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07.1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부칙신설 2022.07.15]

부칙 (2023.12.26)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시행일 기준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본부칙신설 2023.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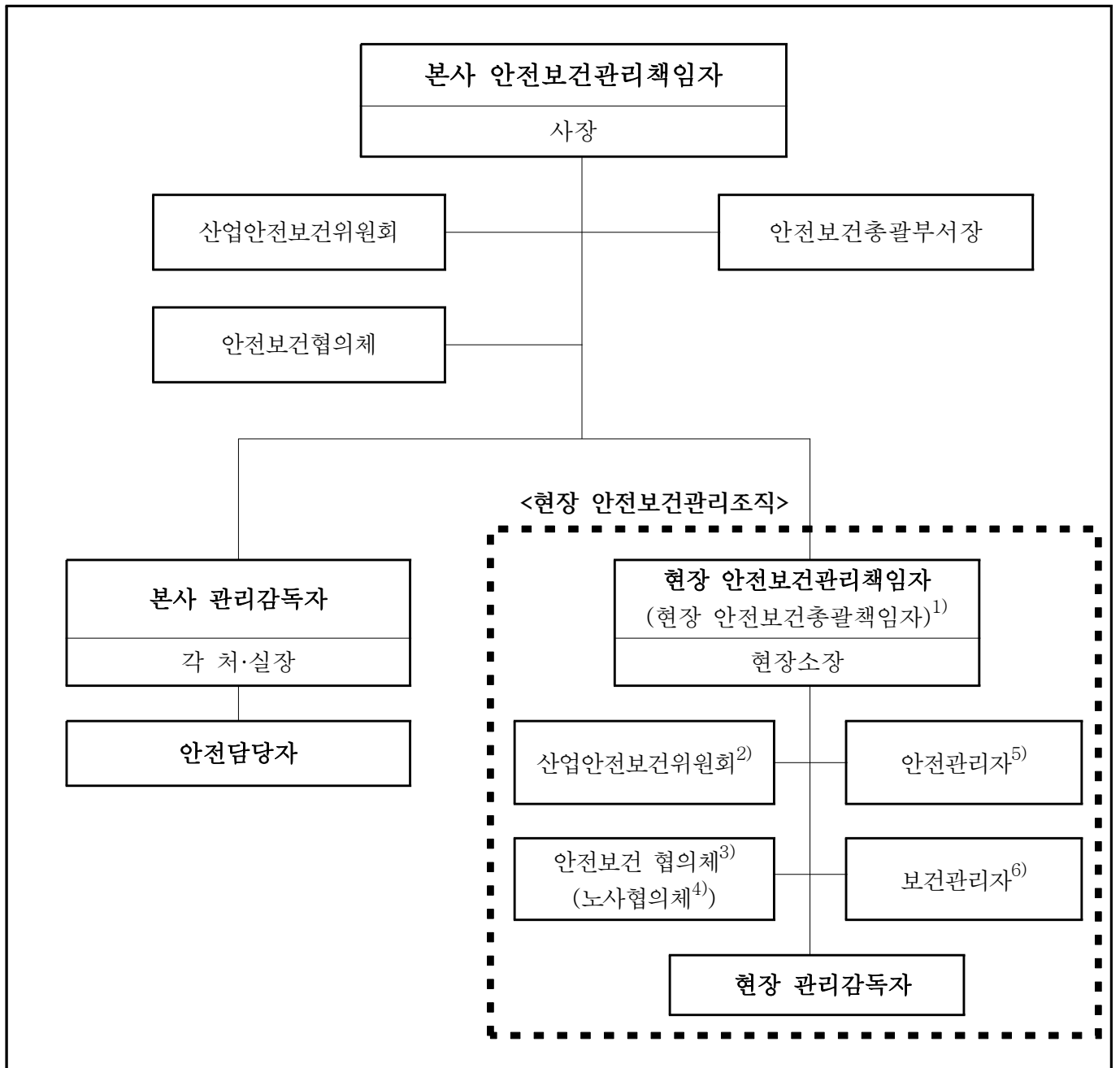
부칙 (2024.12.2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부칙신설 2024.12.24]

별표 1. (2024.12.24. 신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2) 「법」 「영」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에 따름
- 3)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설치
- 4) 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노사협의체로 구성·운영 가능
- 5) 「법」 「영」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에 따름
- 6) 「법」 「영」 별표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에 따름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구분	직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p>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 제9조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관리감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7.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p>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p> <p>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5조 ~ 제41조에서 정하는 사항</p>
<p>안전관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보건관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과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